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한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41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7일

발 의 자 : 오한아 의원 (1명)

찬 성 자 : 김화숙, 이승미, 김제리,
고병국, 김춘례, 이병도,
임종국, 경만선, 노승재
의원 (9명)

1. 제안이유

시책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명예시장제도가 계획과 달리 이들의 정책 제안 활동이 저조한 바,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시장들의 의무와 해촉 사유를 강화하고 활동이 우수할 경우 포상하도록 규정함

또한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명예시장을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등에 공개모집 함(안 제5조제4항).

나. 명예시장은 재임기간 동안 해당 분야 정책을 분기별 한 건 이상 제안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다. 성(性)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해촉하도록 함(안 제7조제4호).

라. 서울시 발전에 공헌한 명예시장에게 포상하도록 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명예시장은 시 홈페이지, 지정소식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명예시장은 재임기간 동안 위촉된 분야의 정책을 분기별 한 건 이상 제안해야 한다.”

제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성(性)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시민과 소통, 탁월한 정책 제안으로 서울시 발전에 공헌한 명예시장에게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⑤ (생략)</p> <p>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⑦(생략)</p>	<p>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p> <p>⑦(현행과 같음)</p>
<p>제5조(명예시장의 위촉) ① ~②(생략)</p> <p>③ 명예시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5조(명예시장의 위촉) ① ~②(현행과 같음)</p> <p>③ -----, 한 번만 -----.</p> <p>④ 명예시장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한다.</p>
<p>제6조(명예시장의 의무) ① ~ ③(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6조(명예시장의 의무) ① ~ ③(현행과 같음)</p> <p>④ 명예시장은 재임기간 동안 위촉된 분야의 정책을 분기별 한 건 이상 제안해야 한다.</p>
<p>제7조(명예시장의 해촉) 1. ~ 3.(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4. (생략)</p>	<p>제7조(명예시장의 해촉) 1. ~ 3.(현행과 같음)</p> <p>4. <u>성(性)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u></p> <p>5. (현행 4호와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u>제11조(포상) 시장은 시민과 소통, 탁월한 정책 제안으로 서울시 발전에 공헌한 명예시장에게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u></p>